

11월 10일 (Tue) 17시 발표

부산시 코로나19 현황

총 확진자 (누계)	추가확진자 (오늘)	완치	현재 치료중	사망
598명	1명	555명	28명	15명

※ 부산시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하는 확진자 수가 다른 이유는 집계방식과 발표기준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집계방식) 질병관리청은 최초 검사 기관 기준으로 확진자를 집계, 부산시는 부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확진자를 기준으로 집계
 - (발표기준시점) 질병관리청은 당일 0시 (전일 24시) 기준으로 발표, 부산시는 당일 기준 수시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준수

※ 월,수,금 13시 30분 온라인 브리핑합니다. ▶

[코로나19 지속가능관리방안 브리핑\('20.11. 4.\)](#)

사회적 거리두기

확진자 이동경로

코로나19 발생현황

코로나19 지원정책

인터넷 방역단 / 클린존

의료지원 / 심리상담

시민 행동수칙

공지사항

코로나19 Q & A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11.7. ~ 해제 시까지)

마스크착용 의무화 관련 Q&A

구상권에 관한 모든 것

마스크 의무화의 모든 것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부산광역시 거리두기 1단계

(2020.11. 7. ~ 해제 시까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안녕한 부산을 만들어 갑시다



구 분	거 리 두 기 1 단 계 (11.7. ~ 해제 시까지)	
중점관리시설 (9종)	(공통)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 테이블 칸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 학원(교습소 포함) / 직업훈련기관 / PC방/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워터파크·놀이공원 / 이·미용업 / 독서실·스터디카페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환기·소독 ※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구분	거리두기 1 단계 (11.7. ~ 해제 시까지)	
	실내체육시설	▲ 마스크 착용 ▲ 출입자 명단 관리 ▲ 환기·소독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 집회·시위장 / 실내 스포츠 경기장 / 대중교통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 / 주·야간보호시설 /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국공립시설	▲ 소관 부처·지자체에서 수립한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방역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시설별 방역 지침에 따라 운영, 가능한 경우비대면서비스 병행 ▶ (아동)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 (노인)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주간보호시설 등 ▶ (장애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 (기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임·행사	▲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방역 관리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행사) 집회·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스포츠 관람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 관중 입장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교	2/3 밀집도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과대·과밀학교는 2/3 유지 권고	
종교활동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등에서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모임·식사 자제 권고하되 숙박 행사는 금지	
직장근무	▲ (공공기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5)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산하 공공기관 및 사업장 등의 특성에 맞게 방역지침 수립하여 운영 가능 ▲ (민간기업) 공공기관 수준의근무 형태 개선 권고 재택근무가 어려운밀폐·밀집 사업장*은 근무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행정명령	◎ 선박 출입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해운항만과-6207) : 8.19. ~ 별도 해제 시까지 ◎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건강정책과-25023)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전세버스 탑승자명부 작성 의무화(공고2020-321, 버스운영과) : 8.25. ~ 별도 해제 시까지 ◎ 미등록 불법사업자 다단계 사업설명회, 불특정다수 대상 투자설명회 집합금지(공고2020-339, 소상공인지원담당관) : 9. 4. ~ 별도 해제 시까지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 등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고시 (고시 제2020-435호) : 2020.11.6.	
위반시	시설·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2020.11.7. ~ 해제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부산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구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 수	부산시 15명 미만	부산시 15명 이상	※세 가지 상황 중 1개 충족 시 격상 ① 2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② 2개 이상 권역 2단계 유행 지속 ③ 전국 300명 초과	전국 400명~ 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전국 800명~ 1,0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수도권 100명 미만	수도권 100명 이상			
	타권역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 미만)	타권역 30명 이상 (강원·제주 10명 이상)			
모임 행사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1단계 조치 유지 축제 등 일부 행사는 100 이상 금지	100인 이상 금지	5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종교 활동	좌석 한 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 (숙박행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3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비대면 예배 20명 이내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2020. 11. 13.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줍!** 쓰자

부산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구분	생활방역	지역적 유행 단계		전국적 유행 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콜센터, 의료기관·약국, 주야간 보호시설, 요양시설, 유통물류센터,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단계 + 실외 스포츠 경기장 등 추가	실내 전체, 실외 위험도 높은 활동	실내 전체,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	

*중점관리시설(9종) : ①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 ⑤직업훈련기관 ⑥공연장 ⑦영화관 ⑧놀이공원·워터파크 ⑨오락실·멀티방 ⑩목욕장업 ⑪실내체육시설 ⑫아·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⑭독서실, 스터디카페

※사회적 수용성 및 행정력 등을 고려하여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 범위는 차등적으로 확대